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전 기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 발전설비용량 기준 폐지 (안 제19조제1항제4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u>〈단서 신설〉</u>	4. ----- ----- ----- ----- ----- ----- ----- ----- --. <u>다만,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연 락 처	(044) 203 - 3916